

# 『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5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5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6월 3일

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

2015년 7월 8일

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

나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용도지역·지구에서의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임

## 다. 주요내용

-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토지소유자의 의견서 제출 생략(안 제7조)
- 주민의견 청취시 공람절차의 간소화(안 제8조)
-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취소 사유 외 부분 삭제(안 제28조)
-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대해 법령 또는 조례 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, 건폐율, 용적률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 증설 가능(안 제58조의3)
- 생산녹지·자연녹지·생산관리·계획관리지역에 기존 공장에서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 증축 시 건폐율 40%로 완화(안 제59조의2)
- 생산녹지·자연녹지·생산관리지역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(안 별표15,16,18)
-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시설 입지제한 사항 삭제(안 별표19)
- 자연취락지구 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허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료복지 향상(안 별표22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- 본 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,  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·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완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,

○ 주요 내용으로는,

-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소유자의 의견서 제출 생략 및 주민의견 청취 시 공람절차 간소화
- 건폐율, 용적률이 부적한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한 증설 가능
-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완화
  - 식품공장 범위 확대
  - 자연취락지구에서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허용 등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법률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절차 및 서류 간소화 등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     략

5. 토      론      요      지 : 생     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     음

7. 심      사      결      과 : 원안가결